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	세부 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05					분석 일시		2025.01.05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공시료	-	-	-	2025.01.05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공시료	-	-	-	2025.01.05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A - 1	부지경계선1	KMS5100 / 1	10.3	2025.01.05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A - 2	부지경계선2	KMS5100 / 1	10.3	2025.01.05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A - 3	부지경계선3	KMS5100 / 1	10.5	2025.01.05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A - 4	부지경계선4	KMS5100 / 1	10.5	2025.01.05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			-이하여백-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	세부 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읍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11					분석 일시		2025.01.11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공시료	-	-	-	2025.01.11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공시료	-	-	-	2025.01.11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B - 1	부지경계선1	KMS5100 / 1	10.3	2025.01.11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B - 2	부지경계선2	KMS5100 / 1	10.3	2025.01.11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B - 3	부지경계선3	KMS5100 / 1	10.5	2025.01.11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B - 4	부지경계선4	KMS5100 / 1	10.5	2025.01.11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B - 5	위생설비입구	KMS5100 / 1	10.4	2025.01.11	0.0041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6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5	2025.01.11	0.0047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7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4	2025.01.11	0.0051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8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4	2025.01.11	0.0056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9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3	2025.01.11	0.0043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10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3	2025.01.11	0.0043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작업장주변 : 실내 사용자 없음으로, 측정대상 제외.			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-2

구분	지점		세부 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읍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11					분석 일시		2025.01.11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B - 11	폐기물반출구	KMS5100 / 1	10.3	2025.01.11	0.0053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12	폐기물반출구	KMS5100 / 1	10.3	2025.01.11	0.0047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13	폐기물반출구	KMS5100 / 1	10.3	2025.01.11	0.0047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14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4	2025.01.11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B - 15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5	2025.01.11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			-이하여백-				
	작업장주변 : 실내 사용자 없음으로, 측정대상 제외.			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	세부 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12					분석 일시		2025.01.12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공시료	-	-	-	2025.01.12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공시료	-	-	-	2025.01.12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C - 1	부지경계선1	KMS5100 / 1	10.3	2025.01.12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C - 2	부지경계선2	KMS5100 / 1	10.3	2025.01.12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C - 3	부지경계선3	KMS5100 / 1	10.3	2025.01.12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C - 4	부지경계선4	KMS5100 / 1	10.4	2025.01.12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C - 5	위생설비입구	KMS5100 / 1	10.5	2025.01.12	0.0041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6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4	2025.01.12	0.0035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7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5	2025.01.12	0.0053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8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5	2025.01.12	0.0047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9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3	2025.01.12	0.0048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10	폐기물반출구	KMS5100 / 1	10.3	2025.01.12	0.0042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11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3	2025.01.12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C - 12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5	2025.01.12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작업장주변 : 실내 사용자 없음으로, 측정대상 제외.			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 Environment Company.
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13					분석 일시		2025.01.13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공시료	-	-	-	2025.01.13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공시료	-	-	-	2025.01.13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D - 1	부지경계선1	KMS5100 / 1	10.	2025.01.13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D - 2	부지경계선2	KMS5100 / 1	10.	2025.01.13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D - 3	부지경계선3	KMS5100 / 1	10.	2025.01.13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D - 4	부지경계선4	KMS5100 / 1	10.	2025.01.13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D - 5	위생설비입구	KMS5100 / 1	10.	2025.01.13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6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3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7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3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8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3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9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3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10	폐기물반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3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11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	2025.01.13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D - 12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	2025.01.13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작업장주변 : 실내 사용자 없음으로, 측정대상 제외.			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 Environment Company.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	세부 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능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14					분석 일시		2025.01.14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공시료	-	-	-	2025.01.14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공시료	-	-	-	2025.01.14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E - 1	부지경계선1	KMS5100 / 1	10.	2025.01.14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E - 2	부지경계선2	KMS5100 / 1	10.	2025.01.14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E - 3	부지경계선3	KMS5100 / 1	10.	2025.01.14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E - 4	부지경계선4	KMS5100 / 1	10.	2025.01.14.	-	1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E - 5	위생설비입구	KMS5100 / 1	10.	2025.01.14.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6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4.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7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4.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8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4.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9	음압기배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4.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10	폐기물반출구	KMS5100 / 1	10.	2025.01.14.	0.00	30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11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	2025.01.14.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E - 12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	2025.01.14.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작업장주변 : 실내 사용자 없음으로, 측정대상 제외.			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	세부 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읍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15					분석 일시		2025.01.15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공시료	-	-	-	2025.01.15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공시료	-	-	-	2025.01.15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F - 1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5	2025.01.15.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F - 2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5	2025.01.15.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			-이하여백-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	세부 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실내	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		4개 이상	해당 지점 주변 5m이내, 높이 1.2-1.5m	- 부지경계선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 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·하층 설정가능
		실외	1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위생설비 지점		전수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 (지점당 2개 이상)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이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
	음압기 배출구		전수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-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-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	해당지점 주변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-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

<실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50116					분석 일시		2025.01.16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분석 계수 시야수	검출석면의 종류
	공시료	-	-	-	2025.01.16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공시료	-	-	-	2025.01.16.	-	-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G - 1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5	2025.01.16.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G - 2	폐기물보관지점	KMS5100 / 1	10.5	2025.01.16.	-	300	검출한계 미만 (불검출)
				-이하여백-				
분 석 연 구 원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㎤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5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㈜하늘석면기술연구원

분 석 결 과

공기 중 석면 농도 분석

석면분석 보고서 일련번호	측 정 일	2025. 01. 11.
AR.NO.20250111	분 석 일	2025. 01. 11.

1. 개 요

기관 및 의뢰자	익산시청
시료채취 주 소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6-10
시료채취 위 치	붙임 참조
분 석 연 구 원	구지연, 김미경

2. 분석결과 / 적용분석법

분석방법 : 위상차현미경(PCM)검측

NO	시료명	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 (개/㎤)	초과여부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1	AA - 1	1F 수학교과교실2	100분	10.4	0.0037	기준치 미만
2	AA - 2		100분	10.5	0.0033	기준치 미만
3	AA - 3	1F 수학교과교실1	100분	10.4	0.0037	기준치 미만
4	AA - 4		100분	10.5	0.0051	기준치 미만
5	AA - 5	1F 복도	100분	10.3	0.0043	기준치 미만
6	AA - 6		100분	10.3	0.0038	기준치 미만
7	AA - 7	1F 복도2	100분	10.3	0.0033	기준치 미만
8	AA - 8		100분	10.3	0.0033	기준치 미만
7	AA - 7	옥탑층 계단실	100분	10.4	0.0047	기준치 미만
8	AA - 8		100분	10.4	0.0051	기준치 미만

※ 참 고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)에 따라 1㎥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공기 중 시료채취 시 송풍기를 사용하여 비산시켰음.
- 검출한계<0.002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- **결과통보시간 : 19:40**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분 석 결 과

공기 중 석면 농도 분석

석면분석 보고서 일련번호	측 정 일	2025. 01. 12.
AR.NO.20250112	분 석 일	2025. 01. 12.

1. 개 요

기관 및 의뢰자	익산시청
시료채취 주 소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6-10
시료채취 위 치	붙임 참조
분 석 연 구 원	구지연, 김미경

2. 분석결과 / 적용분석법

분석방법 : 위상차현미경(PCM)검측

NO	시료명	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 (개/㎤)	초과여부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1	BB - 1	4F 2-6	100분	10.3	0.0033	기준치 미만
2	BB - 2		100분	10.3	0.0038	기준치 미만
3	BB - 3	4F 2-5	100분	10.5	0.0037	기준치 미만
4	BB - 4		100분	10.5	0.0042	기준치 미만
5	BB - 5	4F 2-4	100분	10.4	0.0042	기준치 미만
6	BB - 6		100분	10.4	0.0047	기준치 미만
7	BB - 7	4F 복도	100분	10.3	0.0038	기준치 미만
8	BB - 8		100분	10.3	0.0043	기준치 미만
			-이하여백-			

※ 참 고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)에 따라 1㎥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공기 중 시료채취 시 송풍기를 사용하여 비산시켰음.
- 검출한계<0.002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- **결과통보시간 : 19:33**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분 석 결 과

공기 중 석면 농도 분석

석면분석 보고서 일련번호	측 정 일	2025. 01. 13.
AR.NO.20250113	분 석 일	2025. 01. 13.

1. 개 요

기관 및 의뢰자	익산시청
시료채취 주 소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6-10
시료채취 위 치	붙임 참조
분 석 연 구 원	구지연, 김미경

2. 분석결과 / 적용분석법

분석방법 : 위상차현미경(PCM)검측

NO	시료명	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 (개/㎤)	초과여부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1	CC - 1	3F 진학지도실	100분	10.5	0.0033	기준치 미만
2	CC - 2		100분	10.3	0.0038	기준치 미만
3	CC - 3	3F 정진학습실(인문)	100분	10.3	0.0043	기준치 미만
4	CC - 4		100분	10.3	0.0033	기준치 미만
5	CC - 5	3F 정진학습실(자연)	100분	10.3	0.0043	기준치 미만
6	CC - 6		100분	10.4	0.0047	기준치 미만
7	CC - 7	3F 복도	100분	10.5	0.0047	기준치 미만
8	CC - 8		100분	10.4	0.0037	기준치 미만
			-이하여백-			

※ 참 고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)에 따라 1㎥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공기 중 시료채취 시 송풍기를 사용하여 비산시켰음.
- 검출한계<0.002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- **결과통보시간 : 19:15**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분 석 결 과

공기 중 석면 농도 분석

석면분석 보고서 일련번호	측 정 일	2025. 01. 14.
AR.NO.20250114	분 석 일	2025. 01. 14.

1. 개 요

기관 및 의뢰자	익산시청
시료채취 주 소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6-10
시료채취 위 치	붙임 참조
분 석 연 구 원	구지연, 김미경

2. 분석결과 / 적용분석법

분석방법 : 위상차현미경(PCM)검측

NO	시료명	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 (개/㎤)	초과여부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-	-	공 시료	-	-	-	검출한계미만
1	DD - 1	2F 3-3	100분	10.5	0.0042	기준치 미만
2	DD - 2		100분	10.5	0.0042	기준치 미만
3	DD - 3	2F 3-2	100분	10.3	0.0043	기준치 미만
4	DD - 4		100분	10.3	0.0048	기준치 미만
5	DD - 5	2F 3-1	100분	10.3	0.0052	기준치 미만
6	DD - 6		100분	10.4	0.0047	기준치 미만
7	DD - 7	2F 복도	100분	10.4	0.0033	기준치 미만
8	DD - 8		100분	10.4	0.0037	기준치 미만
			-이하여백-			

※ 참 고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)에 따라 1㎥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공기 중 시료채취 시 송풍기를 사용하여 비산시켰음.
- 검출한계<0.002/㎤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- **결과통보시간 : 19:25**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